

# 「구미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추은희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강승수 의원 외 7인

### 3. 제안이유

-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, 치유관광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치유관광산업 인증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자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사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, 제48조의5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최근 여행·관광 트렌드가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,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관광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복합 관광산업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치유관광 계획 및 사업 수립 시 금오산 탐방로, 지산샛강 황톳길, 옥성 자연휴양림 등 관내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과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아직 관내 치유관광 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더불어, 향후 위탁 기관 선정 시 의료·관광·치료 센터 등 체계적 치유요법의 도입 및 구체적 계획 수립을 통해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,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